

재해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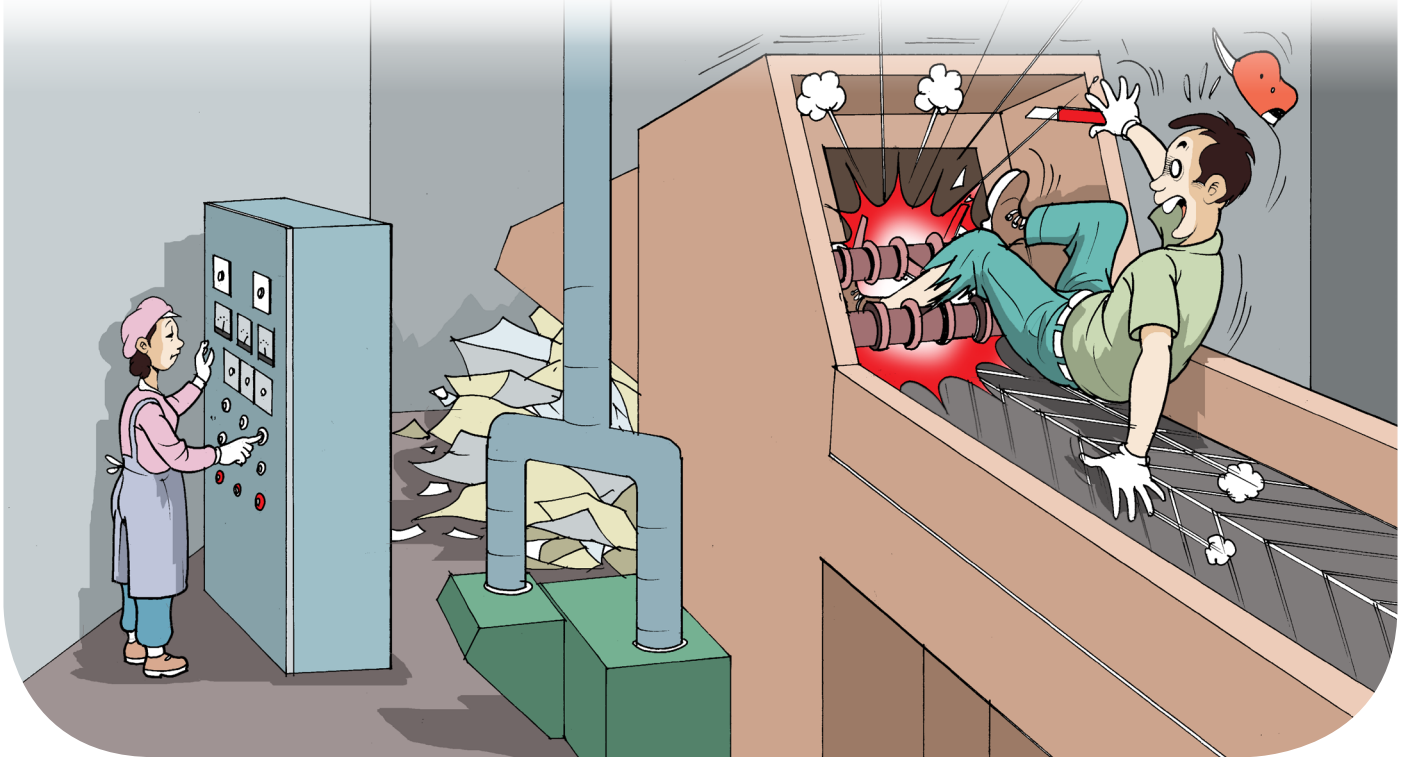
(감용기 칼날)

스티로폼 감용기 이물질 제거 중 끼임



자원회수 시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스티로폼 감용기의 원료 파쇄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밟고 올라가 작업하던 중 타 작업자의 기계 작동에 의해 다리가 빨려 들어감

※ 스티로폼 감용기 : 버려지는 스티로폼, PP, 박스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피를 축소시키는 기계로서 파쇄, 압축, 용융의 과정을 수행



! 재해발생 원인

- 전용 점검구를 이용해 작업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탑승해 작업 실시
- 타 작업자의 기동장치 오작동 방지를 위한 표지판과 잠금장치 미설치

+ 안전작업 방법

TIP

1 정비·청소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

- 타 작업자가 기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잠금장치 설치
- 작업지휘자 배치, 통제 하에 작업 진행

2 컨베이어 등 원재료 운반 기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

- 기계 운전시작 전 안전조치 철저
 - 기계 운전을 시작할 경우 신호할 사람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, 그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





스티로폼 감용기 이물질 제거 중 끼임

‘설비 작동금지’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세요!

기계 점검 혹은 청소작업 중에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이곳은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선별, 압축·파쇄·출하하는 작업장입니다.



끼리릭 끼리릭

에 뭐가 문제가 있나?



칼날에 테이프가 뭉쳤네. 이게 항상 말썽이야...

점검구에서는 손이 닿지 않네. 켜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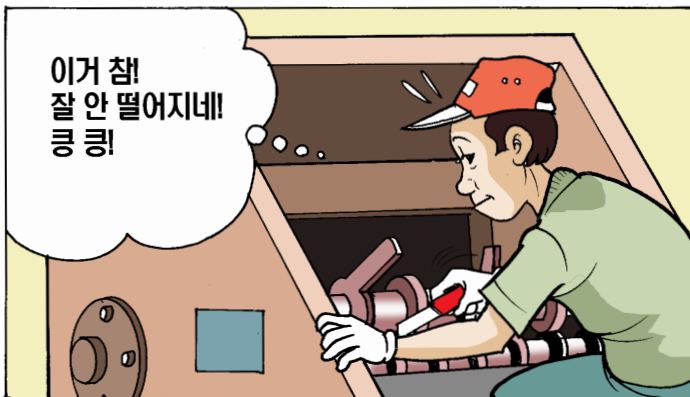
일단 기동스위치를 차단하고...



설마 누가 작동하지 않겠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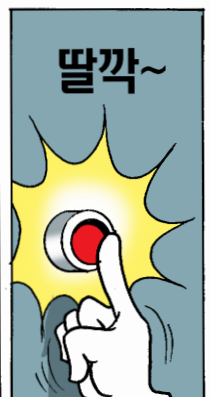
이거 참! 잘 안 떨어지네! 켜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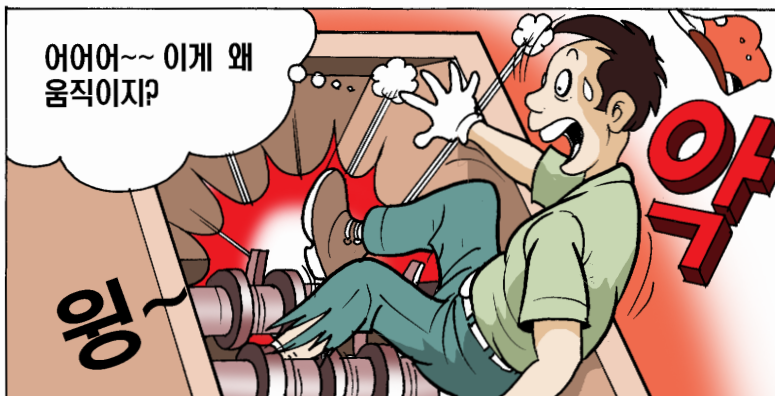
에 작업이 왜 멈췄지?



딸깍~



어어어~~ 이게 왜 움직이지?



설비 점검시에는 기동장치에 “정비 중 조작금지” 라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. 또 컨베이어 벨트 등 운반기구에는 절대 탑승하면 안 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(탑승의 제한), 제89조(운전 시작 전 조치),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)

